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 일자	심 사 경 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2205657)	2024. 11. 18.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주호영의원 (2207145)	2024. 12. 31.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5.7.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이해식의원 (2209516)	2025. 04. 01.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5.7.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2소위(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5. 11. 26.)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위 3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약류의 단속·수사·규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위임된 신규채용시험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마련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나.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8호라목 신설).

다.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법에 마약류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명시함(안 제20조제2항).

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주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함(안 제27조 단서).

법률 제 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제20조제2항 중 “시험방법,”을 “시험방법(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의 검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단서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ㆍ제58조의2ㆍ제59조부터 제

64조까지ㆍ제65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6호의2, 제8호라목 및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다. (생 략) <신 설> 9.·10. (생 략)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7. (현행과 같음) 8.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9.·10. (현행과 같음)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험방법(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의 검사를 포함한다),-

	----------.
<신 설>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주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제27조(당연퇴직) ----------. ----------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의2·제59조부터 제64조까지·제65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